

제44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요약본)

1. 일 시 : 2013. 7. 17 (수), 15:00 ~ 19: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김호섭 의장, 이순일 부의장, 이재호 평의원, 이강준 평의원, 이효철 평의원, 강희진 평의원, 김진우 평의원, 윤갑희 평의원 - 총 13명 중 8명 참석
(불참 : 나상신 평의원, 윤성승 평의원, 임정민 평의원, 정승민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 평의위원회 출석요청으로 교무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의료원 행정부원장 출석

4. 의안

- 심의사항 : 학칙 개정 (안) 사전 심의
- 자문사항 : 2013학년도 교비회계 추경 (안) 재 자문
- 기타 논의 사항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관련

5. 회의결과

가. 심의사항

- 아래의 학칙 개정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사전 심의함. 7월 23일 (화) 예정인 교무회의의 안건 통과 후 이메일로 최종 심의기로 함.

[주요 개정내용]

- 제4조(기구) : [별표1] 연구기관에 ‘아주중개연구센터’, 특별기구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추가
- 제7조의3(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내용에 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직제설치 및 운영방법 명시
- 제8조(대학원) : 문화콘텐츠학과, 의생명정보시스템공학과(학과간협동과정) 신설
- 제25조(재입학) : 2회차 재입학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재입학 관련 세부사항을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위임
- 제45조(학점인정) : 현장실습을 통한 학점인정 근거 설정
-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 학과 특성에 따라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전공과목과 연구학점 이수학점 기준 조정

* 상세내용은 하계 임시 교무회의의 결과 참조

< 간서명 란 >

의 장



* 사전 심의 한 위 내용 중 제8조 (대학원) 부분과 제25조(재입학) 부분 (파란색)은 교무회의 전 최종 보고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추후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다시 교무회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 예정임.

나. 자문사항

○ 해외부동산 펀드 관련 선물환 분쟁 근황

1) 질의사항 : 지난 4월 2012학년도 결산 자문 시 보고된 해외부동산 펀드 관련 선물환 분쟁이 최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근황을 질의함.

2) 보고사항

- 학교는 2012년 5월4일 이후 하나은행으로부터 '선물환 가지급금 독촉장' 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서를 수신한 적이 없음.
- 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사항을 검토 중임. 하나은행 선물환 계약 무효 소송 및 부동산 펀드 환매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고민 중에 있음.
- 올해 안으로는 해외부동산 펀드 관련 선물환 분쟁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해외부동산 펀드 관련 선물환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강구할 예정임.

3) 자문사항

- 목표수익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자금운용위원회' 등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계약무효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부동산 펀드 처리는 추후에 수익 변동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계약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100% 승소 가능성 보다 서로 손실을 나누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실 여부에 대한 보존 방안이나 책임 여부 등과 관련된 내용도 사전에 논의되어야 할 것임.

○ 교내 임대료 관련 사항

1) 질의사항

- 2013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안)의 임대보증금 수입 감소 등과 관련하여 교내 임대료 현황 및 최근 언론에 보도된 캠퍼스 플라자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함.

< 간서명 란 >

의 장



- 특히, 34차 대학평의회에서 일괄 임대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일괄 임대라는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 이유, 근거, 절차 및 의사결정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그리고 이번 문제로 인해 발생한 캠퍼스플라자 임대 예상수익 손실 또는 미실현이익이 얼마인지 등을 질의함

2) 보고사항

- 캠퍼스플라자 임대 문제는 학교의 이익을 위해 임대업자와 계약을 둘러싼 협상의 와중에 있음. 추후 보고 예정임.
- 캠퍼스플라자의 경우 건물구조, 주차장, 평판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임대가 안되고 있음. 이에 대한 자문 및 아이디어를 주시면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진행되는 미묘한 상황을 감안하여, 협상이 완료되면 추후 자세한 정황을 보고할 예정임.

3) 자문사항

- 캠퍼스플라자 임대 절차 및 비용 손실에 대한 보고가 임대업자와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임. 회의에 참석한 학교 보직자 및 평의원 모두 학교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으니,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캠퍼스플라자 임대를 둘러싼 문제가 종료되면, 보고한 대로 차기 평의회에서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한 경과보고를 해 주기 바람.
- 향후 학교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책적인 업무, 일반 관례적 업무 등으로 나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 행사된 권한 크기에 비추어 상응하는 책임 부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캠퍼스플라자 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으로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됨. 이 또한 심각한 손실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하고 대처할 것을 당부함.

○ 소송 비용 및 소송 관련 진행 사항

- 1) 질의사항 : 2013학년도 1차 추경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률 자문수수료 및 교내 소송 수수료 등이 증가하였음. 이에 지난 43차 회의에서 최근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부담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타 대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본교의 법적 분쟁 현황 및 법적 소송비용 교비 사용 적법성에 대해 질의함.

< 간서명 란 >

의 장



2) 보고사항

- 지난 회의에서 소송 당사자가 대우학원 이사장으로 명기되어 있는 법적 분쟁의 경우 소송 비용을 교비로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2) 39p~40p]

- 교원 및 직원의 임면은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및 제 70조의 2에 의하여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사회 의결)에서 임면하고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의견서 일부]

-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법인회계 또는 교비회계 중 어떤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하는지는 해당 소송물의 업무 범위가 법인과 학교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교는 법인격이 없는 영조물에 불과하여 대외적 법인격은 학교법인에게만 존재하나 회계상으로는 교비회계가 법인회계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므로 어느 기관의 업무인지에 따라 지출 회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지난 회의에 언급된 타 대학 사례의 중 한영신학대학의 경우 교회 소유권 문제로 인한 분쟁이고, 목원대와 수원여대의 경우 이사장이 교수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 본교의 경우 교원의 임면권이 총장에게 있고 기타 진행됐던 다른 소송들도 학교와 관련된 업무들이므로 목원대와 수원여대의 경우와는 다른 사례이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부담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학교에 소송과 관련된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어 법무팀을 운영하고 싶으나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담당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3) 자문사항

- 확실한 목적과 실익이 있지 않는 한 법률적 분쟁 발생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 이런 일과 관련하여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해야 함.
- 법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담당 또는 기구를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법률적 분쟁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

< 간서명 란 >

의 장



부함.

- 교원 인사와 관련된 총장 및 이사회 권한과 관련하여 정관이나 규칙의 해석이 애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교수워크숍 진행 경비 관련 사항

1) 질의사항 : 2013학년도 1차 추경 자료 중 예비비 사용내역에 전체교수워크숍 추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교수워크숍의 성과 및 비용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함.

2) 보고사항

- 금번 교수워크숍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사항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추후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43차 대학평의원회에서 보고한 2013학년도 1차 추경(안) 중 추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2013학년도 1차 추경(안)의 자문을 완료함.

다. 기타 논의 사항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관련 사항

1) 질의사항 : 최근 본교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상황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함.

2) 보고사항

- 본교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192억을 등록금으로 대납했다는 기사는 명백하게 오보임.
- 기사화 된 192억원은 의료원(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포함)이 지난 2002년 노사 단체 협상을 통해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이며, 부속 병원회계 재원으로 지급함. 다만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인건비가 교비회계에서 지급됨에 따라 병원회계에서 일부 금액(41억여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이를 집행하게 된 것임.
- 위와 관련하여 교육부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본교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

3) 자문사항

-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아주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는 정확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본교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 및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특히 정

< 간서명 란 >

의 장



부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평의원회도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여 본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최근의 발생한 일련의 부정적 언론보도를 교훈 삼아, 향후 교비회계의 집행에 있어 보다 엄중한 잣대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함.

[아주대학교 의료원 운영 구분 회계 보충 설명]

아주대학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거 교비회계와 병원회계를 구분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는 내부적으로 본교(의과대학 미포함)와 의과대학 교육운영을 구분하고 있음. 또한 아주대학교 의료원은 의과대학 교육운영과 병원의료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이며,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거 회계 상 의과대학 교육운영은 교비회계, 병원의료운영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있음

위 자료는 제4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추후 관련 주요내용의 녹취록을 첨부해서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간서명란 >

의 장

